

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세부 추진계획

1 교육개요

- 기 간 : 2025. 5. ~ 11. (5~7개월, 탄력적 운영)
 - 사 업 량 : 2팀(선도농가·신규농업인(연수생))
 - 사업내용 :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교육 지원
 - 사 업 비 : 12백만원
- ※ 개소당: 6백만원(선도농가 2백만원, 연수생 4백만원 / 5개월 간)
- 선도농가: 일2만원 * 20일(8시간 이상) * 5개월 = 2백만원
 - 연 수 생: 일4만원 * 20일(8시간 이상) * 5개월 = 4백만원

2 교육대상

【 연수생 】

※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

- 농식품부 2025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 사업」 신청자
-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
-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)
-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- 예비귀농인(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영동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)

【 선도농가 】

- 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·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 실습교육장(WPL), 농업명인,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
-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(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)
-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단, 연수생이 초보 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)

3

운영방법

- (필수)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
 - * 단순노동(직업)보다는 학습지원, 기술이전,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
- 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: 3~7개월, 일 8시간, 월 160시간 이내
 - 자가영농 실습: 일 4시간, 월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담당자 및 선도농가와 협의하여 인정 가능 * 자가영농의 경우에도 선도농가 실습을 병행해야 함 (예) 자가영농 오전 4시간, 선도농가 오후 4시간
- 현장실습보고서를 월 1회 e-HRD 시스템에 등록
- 스마트기기(휴대폰)를 활용한 “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” 사용 필수※ <http://hrdrda.go.kr>
 - * 모든 연수생은 반드시 『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』을 이용하여 출결관리를 해야하며, 연수생 선정단계에서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연수생 선발

4

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

- 신청기간 : 2025. 3. 26.(수) ~ 4. 9.(수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영동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접수(☎043-740-5522)
 - ※ 서류확인 및 사업안내를 위하여 방문접수 권장
- 제출서류 : 게시판 붙임문서 참조
- 사업대상자 선정

【 연수생 】

- 연수생 선정 시 다음 대상이 우대될 수 있음
 - 농식품부 2025년도 「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」 신청자
 - 청년농업인(만40세미만) 및 여성농업인
-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(농업인)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
 - *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

【 선도농가 】

-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, 선정기준에 의해 연주시행자를 최종 선정
-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약정 불가

○ 사업대상자 선정

- 심사내용: 신청자 자격여건, 귀농교육, 서류 사실여부 등 확인
- 선발방법: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점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5 연수생 및 선도농가 약정사항

○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서면 통지

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

- ★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
- ★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·변경하고 필요 시 추가 약정체결 추진

-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재약정이 가능하며, 이때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약정 체결

6 교육지원비 지급

【 연수생 】

- (지원금액) 월 80만원 한도(3~7개월간) 지급
- (지원조건) 매월 10일(1일 8시간) 이상 연수한 경우만 지원하며, 이때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
 - * 월 10일 미만 연수 시 교육훈련비 미지급 / 8시간 미만 연수 시 미지급
 - * 1일 지급단가(8시간 기준) : 4만원(교통비, 식비 등 포함)
- (신청방법)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 후,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
 - *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
- (지급시기 및 방법)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및 제출 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 연수생 명의의 계좌에 입금
 - * 출석 및 연수일 확인은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을 통해 확인

【 선도농가 】

- (지원금액)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(3~7개월) 지급
 - * 연수생이 2명일 경우 연수생 각각 계산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지급 가능
- (지원조건)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며, 이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포장과 재료 등을 제공하는 조건임
 - * 단,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
 - * 1일 지급단가(8시간 기준): 2만원(식비, 실습재료비 등 포함)
- (신청방법)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를 e-HRD 시스템에 등록 후,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수수당 청구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
 - *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
- (지급시기 및 방법)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및 제출 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 선도농가 명의의 계좌에 입금
 - * 출석 및 연수일 확인은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을 통해 확인

※ 현장실습 교육비 지급 예시

- 귀농연수생 1일 지급단가(8시간 기준) : 4만원 (1일 8시간 미만 연수시 미지급)
- 예시 1) 5월 한달간 20일(160시간) 이상 연수시 : 연수생(80만원), 선도농가(40만원)
 예시 2) 5월 한달간 15일(120시간) 연수시 : 연수생(60만원), 선도농가(30만원)
 예시 3) 5월 한달간 10일(80시간) 미만 연수시 : 미지급

7 유의사항 및 기타안내사항

-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(연수생 및 선도농가) 선발 또는 실습 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습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에서 제외
- 실습내용 및 자세한 사항(상호학습방법, 실습기간 등)은 농업기술 센터 담당자와 협의후 진행
- 현장실습교육 종료 후 2년간 수료생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
 - * 사후관리내용: 귀농 여부, 영농조사 현황 등

끝.